

[3000 경제개발] [3100 농수산물개발] [3120 수산물진흥] [3122 수산물증식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장관항	세항 세세항				
3000	경제개발	9,399,400	8,482,500	916,900	[국 5,922,000 시 3,381,400] [분 96,000 교 0 기 0]
3100	농수산물개발	9,399,400	8,482,500	916,900	[국 5,922,000 시 3,381,400] [분 96,000 교 0 기 0]
3120	수산물진흥	9,399,400	8,482,500	916,900	[국 5,922,000 시 3,381,400] [분 96,000 교 0 기 0]
3122	수산물증식	9,399,400	8,482,500	916,900	[국 5,922,000 시 3,381,400] [분 96,000 교 0 기 0]
200	사업예산	9,399,400	8,482,500	916,900	[국 5,922,000 시 3,381,400] [분 96,000 교 0 기 0]
210	보조사업	8,307,000	7,792,500	514,500	[국 5,922,000 시 2,385,000] [분 0 교 0 기 0]
	401 시설비및부대비	4,286,000	4,837,000	△551,000	[국 3,000,000 시 1,286,000] [분 0 교 0 기 0]
		4,264,875	4,811,370	△546,495	01 시설비 ○ 인공어초시설사업 = 3,739,875 [국 2,991,900 시 747,975] ○ 종묘생산동 신축 = 525,000
		7,000	10,000	△3,000	02 감리비 ○ 종묘생산동 신축 = 7,000
		14,125	15,630	△1,505	03 시설부대비 ○ 인공어초시설사업 = 10,125 [국 8,100 시 2,025]

[3000 경제개발] [3100 농수산물개발] [3120 수산진흥] [3122 수산증식]

과 목	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	비 교 감	산 출 기 초
장관항	세항 세세항				
					○ 종묘생산동 신축 = 4,000
	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	4,021,000	2,955,500	1,065,500	[국 2,922,000 시 1,099,000] [분 0 교 0 기 0]
		3,634,000	2,268,000	1,366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
					○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= 350,000
					[국 250,000 시 100,000]
					○ 수산종묘매입방류 = 2,609,000
					[국 1,826,000 시 783,000]
					○ 침체어망 인양사업 = 562,500
					[국 450,000 시 112,500]
					○ 양식어장정화사업 = 112,500
					[국 100,000 시 12,500]
		387,000	687,500	△300,5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
					○ 어초어장관리사업 = 250,000
					[국 200,000 시 50,000]
					○ 방류효과조사 = 137,000
					[국 96,000 시 41,000]

[3000 경제개발] [3100 농수산물개발] [3120 수산물진흥] [3122 수산물증식]

과		목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	비 교 증 감	산 출 기 초	
장관항	세항	세세항					목
			220 자체사업	1,092,400	690,000	402,400	[국 0 시 996,400] [분 96,000 교 0 기 0]
			207 연구개발비	228,000	220,000	8,000	
				228,000	220,000	8,000	01 용역비
							○ 연안어장 실태조사 = 160,000 ○ 소규모 바다목장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= 68,000
			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	864,400	470,000	394,400	[국 0 시 768,400] [분 96,000 교 0 기 0]
				814,400	450,000	364,4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
							○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 = 250,000 ○ 문벃낱 굴어장진입로 보강 = 100,000 ○ 해조류(김)양식시설 = 100,000 ○ 수산자원조성사업 = 200,000 ○ 간이수하식 굴양식지원 = 30,000 ○ 불가사리 구제사업 = 134,400 [시 38,400 분 96,000]
				50,000	20,000	30,0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
							○ 인공어초 적지조사비 = 50,000